

# 建築法 改正(案)에 対한 解說

## 建設部 建築課 提供

### 1. 改正의 目的

政府가 建築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는 目的是 크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都市計劃区域内(一定規模以上 建築物에 對하여는 都市計劃区域以外의 区域을 包含함)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기 為하여는 一定한 節次에 따라 市長, 郡守의 許可를 받아 法令에서 定한 各種 基準과 設計에 依據 施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節次 및 基準을 外面한 建築行爲가 나타나는 境遇가 있으므로 이를 違法建築物의 發生을 未然에 効果的으로 防止할 수 있도록 團束上 未備策을 補完하고

둘째, 大都市에의 人口 및 產業集中現象은 심각한 都市公害를 起起시키고 있기 때문에 大都市의 建築過密化 現象抑制 및 都市美觀을 維持, 改善하고자 하는 制度의 褊半침을 마련하고

셋째, 不特定 多數人の 人命과 財產에 對한 危害를 隨伴하는 特殊한 建築物과 高層 또는 大規模建築物에 對한 防火對策, 緊急避難對策等 災害予防에 関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 2. 改正(案)의 内容說明

여기에 紹介하는 改正(案)은 계속 補完 또는 修正될 것으로서 確定된 것이 아님을 序頭에서 밝히는 바이며 便宜上 改正 또는 新設되는 條文順序에 따라 記述하기로 한다.

#### 第2條(用語의 定義)

第3號에 規定하고 있는 “特殊建築物”은 그 用途 및 構造面에서 一般建築物에 比하여 特殊한 條件에 의하여 規制를 받는바 現行 特殊建築物(學校, 病院, 劇場, 觀覽場, 百貨店, 舞蹈場, 公衆浴場, 市場, 旅館, 共同住宅, 寄宿舎, 工場, 倉庫, 貯藏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以外에 “호텔, 危險物貯藏庫(現 貯藏庫 削除), 注油所, 麻埃 및 汚物處理場”을 追加한다.

第5號에 規定하고 있는 地下層은 우리나라의 特殊事情에 따라 待避施設로 利用되기 때문에 그 機能을 考慮하여 바닥이 地表以下에 있는 層으로서 바닥으로부터 地表까지의 높이가 그 層의 天井높이

의  $\frac{1}{3}$ (現行:  $\frac{1}{2}$ ) 以上으로 改正한다.

第13號 및 第14號에 規定하고 있는 “大修繕” 및 “重要變更”的 定義를 現行은 그 解釋이 不分明한 故로 이를 建築物의 主要構造部中 1種以上の 構造에 對한  $\frac{1}{3}$ 以上의 修繕(또는 變更)으로 바꾼다.

第20號乃至 第24號를 新設하여 現行 施行令에 規定하고 있는 用語의 定義中 “建築主”, “設計者”, “設計圖書”, “工事監理者”, “工事施工者”를 規定한다.

第25號를 新設하여 許可府을 定義한다. 現行 許可權者는 市長, 郡守이나 第5條(建築許可)의 規

定에 의한 一定規模以上의 建築物에 대한 建築許可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建築許可를 行하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를 許可廳으로 規定한다.

### 第3條(適用에서의 例外)

第1項에는 各種 文化財는 本法의 規定을 排除하고 있는바 그 文化財의 種類는 文化財 保護法에 規定한 名稱으로 代替시킨 것이다. 即 이를 列記하면 國寶, 宝物, 史跡名勝, 天然記念物, 重要民俗資料, 假指定文化財, 地方文化財 및 美術品이다.

### 第4條(職權의 委任)

第2項을 道知事が 許可權者로 追加됨으로 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 및 区가 設置된 市의 市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事務 및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 郡守 또는 区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5條(建築許可)

建築物의 建築을 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建築”이란 新築, 增築, 改築, 再築 또는 移転을 말하는 것으로 이中 增築時에 있어서는 既存建築物의 規模에 增築規模를 合한 것을 建築許可對象으로 보도록 規定하며 建築許可前에 着工하는 事例를 極力 防止하기 為하여 着工前에 미리 許可를 받도록 明文化하며 勿論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防火地区外에서 延面積 10平方미터 以内의 建築物의 部分을 增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의 申告에 있어서도 역시 같다.

建築許可에 있어서는 当該 建築計劃에 関한 集團規定 및 單體規定에 立脚하여 綿密한 檢討에 隨伴되는 專門的 知識과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것이다. 特히 用途上 特殊建築物이거나 高層 또는 大規模의 建築物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釜山, 大邱를 除外한 地域에 있어서 建築許可擔當者의 資質이 크게 問題視되고 있다 하겠다.

日本의 경우는 一定資格을 具備한 建築士로 하여금 独立된 機構로서의 建築主事制度를 活用하여 이들이 確認業務(우리의 許可行為와 같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社會体制上 이와 같은 方法을 採択하기란 困難한 것이지만 早速히 資格을 갖춘 專門家를 確保하여 建築行政에 徒事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改正(案)에는 이러한 面을 考慮한 나머지 優先 施行 可能한 方法으로 建築許可擔當(責任者)의 資格基準을 建築士法에 의한 一級建築士로 보고 可及의 이들 中心의 建築行政이 되도록 制度의措置를前提로 하여 人口 20万以上都市(推定)와 道에는 確保可能할 것으로 判断되기 때문에 中小都市 및 郡地域內의 建築物로서 延面積 1,000 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層以上의 것은 上位機關(道)에서 許可토록 規定한다.

따라서 道는 建築許可機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條文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建築物의 建築(增築의境遇에 있어서 增築後의 建築物이 第1號 及至 第3號에 揭記한 規模가 되는 경우를 包含한다. 大修繕, 重要變更를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許可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防火地区外에서 建築物을 增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에 增築 또는 改築하는 面積이 10平方미터 以內의 것인 경우에는 미리 許可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1. 特殊建築物用에 供하는 延面積 100平方미터 以上의 것.

2. 延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層以上인 木造의 建築物.

3.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木造以外의 建築物.

4. 其他 都市計劃区域내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

② 前項의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中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市의 行政区域内의 建築物에 对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0平方미터 以上的 것.

## 2. 延面積 1,000 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層以上 의 建築物

### 第 6 條(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等)

現行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規模(現行 施行令: 延面積 300 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 높이 13 미터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 미터 以上의 建築物) 以上의 建築物에 對한 建築, 大修繕, 重要变更 工事時 配置된 工事監理者(建築士)의 权限과 義務가 不分明 及至는 微弱하다.

겨우 있다고 하면 建築士法 第20條 第2項에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서 工事が 設計圖書대로 實施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即時 그 工事施工者에게 注意를 주어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그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建築主에게 報告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음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홀한 工事監理制度를 改善하여 그 权限과 責任을 明示함으로서 違法施工을 事前에 防止할 수 있도록 第3項을 新設하여 “前項의 規定에 依한 工事監理者는 当該工事를 監理함에 있어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処分에 違反된 事項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이를 是正하도록 建築主 및 工事施工者에게 勸告하여야 하고 이에 不応할 때에는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이를 許可府에 報告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한다.

또한 建築物의 施工은 반드시 許可府으로 부터 許可된 設計圖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建築主 또는 工事施工者가 任意대로变更하여 施工한 事例가 있기 때문에 第4項을 新設하여 許可된 設計圖書를 工事現場에 備置하도록 建築主에게 義務化시켜 놓는다.

그러나 建築主에게 義務를 賦課시켜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配置 및 許可된 設計圖書備置를 強制 規定하고 있어나 이를 違反하였을 때에는 勿論 関係 罰則에 의하여 处罰을 받을 것이지만 建築物 自体는 違反된 채 施工되어 積余地가 있기 때문에, 上記 2個規定位과 建設業法 第4條 第2號에 의한 一定規模以上(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이 825 平方미터를 超過하거나 一般建築

物로서 延面積이 1,115 平方미터를 超過한 建築物) 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는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아니면 施工할 수 없도록 된 規定을 違反할 경우에는 当該 建築物의 工事を 할 수 없겠음 建築主와 工事施工者를 同時に 規制한다.

### 第 7 條(建築物에 關한 檢查 및 使用承認)

建築主가 建築工事を 着手 또는 完了하였을 때에 許可府에 이를 申告함에 있어서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定한 建築工事에 있어서는 当該 工事監理者의 署名이 있도록 함으로서 工事監理의 徹底를 期할 수 있는 法的 뒷받침을 하여 준다.

또한 現行法上 一部検査証制를 認定함으로 因하여 이를 惡用하는 事例가 있다. 例를 들면 許可內容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規模가 增加되었을 때에 合法의 部分에 對하여 一部検査畢証을 交付함으로서 違法建築의 助長 또는 默認하는 結果를 超來하는 点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惡用될 要素를 除去하는 代身에

즉 違法 増築을 하였을 때, 所有權 取得을 為한 登記簿登載를 不可能케 하는 一部検査畢証制는 削除하고, 善意의 被害를 막기 為하여 許可府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假使用의 承認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同條에 插入된 規定으로는, 原來 建築物의 竣工検査畢証은 当該 建築物의 基地, 構造 및 建築設備에 關한 使用証을 意味한 것이다. 先進國家에서는 이를 使用証으로 明示되어 있다. 따라서 竣工検査以後 初期 許可 및 竣工內容과 다른 他用途로 使用되거나 그 基地, 構造 및 建築設備의 無斷变更은 許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竣工検査畢証을 使用証으로 看做하고 建築主는 이를 当該 建築物에 恒時 備置하도록 規定한다.

### 第 7 條의 2 (中間検査)

建築物의 違法施工 特히 高層建物의 無斷增築을 積極적으로 防止하고자 하는 手段으로서 許可府의 過失 또는 故意로 인한 違法工事 發見遲延이 없도록 定期의 工程検査를 實施토록 한다. 2 中間 檢査의 對象建築物은 特殊建築物(火葬場, 屠殺場, 廉埃 및 汚物處理場은 除外함)이나 3層以上的 建

築物 또는 延面積이 1,000平方米以上의 建築物로 하며 그 中間検査의 回数, 時期 또는 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 7 條의 3 (建築物의 維持管理)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建築許可 또는 竣工検査以後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의해 当該建築物의 基地·構造 및 建築設備 또는 그 用途가 變更되거나 管理疏忽로 因하여 老朽되어 公益上 支障을 超來할 豐慮가 있음으로 恒常 適法한 狀態로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即 그 内容은 ①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의 基地, 構造 및 建築設備을 恒常 이 法 및 關係法令에서 定한 基準 其他 要件를 維持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② 延面積이 1,000平方米 以上인 特殊建物 또는 5層以上의 建築物의 所有者는 그 建築物의 基地, 構造, 形態, 用途 및 建築設備에 關하여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그 狀態를 調査하여 管轄許可府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 8 條(公用建築物에 対한 特例)

国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 管轄許可府과 協議하거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어찌한 特別한 혜택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그 内容 인즉 許可와 同一한 것임을 添言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第 5 條에서 說明한 바대로 工事着工前에 協議 또는 承認을 留하도록 明文化한다.

### 第 9 條의 2 (土地의 굴착부분에 対한 整理)

이는 都市美觀을 確保하기 为한 規定으로서 無謀한 土取行為 및 이의 放置로 因한 安全上, 美觀上 生活環境을 害치는 것을 막는데 그 目的이 있다.

① 建築主는 基地造成 其他 建築工事에 隨伴하여 土地를 굴착할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建設部令에 定하는 基準에 따라 이를 整理 하여야 한다.

② 許可府은 前項의 整理狀態가 不備 또는 未備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必要한 措置를 命하고 第 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検査를 拒否할 수 있다.

### 第22條(昇降機)

第 2 項을 新設하여 높이 31미터를 超過하는 建築物에는 非常用의 昇降機를 設置토록 規定한다.

### 第23條(特殊建築物等에 있어서의 避難 및 消火에 關한 技術的 基準)

現行 規定을 보면 避難 및 消火施設을 갖추어야 할 對象建物은 学校, 病院, 劇場, 映画館, 演芸場, 觀覽場, 集会場, 百貨店, 旅館, 共同住宅 또는 寄宿舎의 用에 供하는 特殊建築物이나 延面積 1,000 平方米 以上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이 對象建築物을 拡大하여 第 7 條의 2 에서 規定한 中間検査를 받어야할 建築物을 그대로 適用키로 한다.

### 第 23 條의 2 (特殊建築物等의 内裝)

지난날 大然閣호텔, 파레스호텔 또는 大旺코너等 多數人の 人命과 財產被害을 가져온 高層建物의 火災事件은 建築物의 災害對策을 促求하는 不可避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特殊建築物(火葬場, 屠殺場, 廉埃 및 汚物處理場을 例外 함) 및 5層以上의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内裝 即 天井 및 内壁의 마무리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防火上 支障이 없게 施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의 施行에 關한 不燃材料의 基準 및 内裝個所 또는 方法等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에 具体적으로 規制될 것이며 既存建築物로서 이에 該當된 것도 一定期間내에 防火上 支障이 없도록 改修하여야 할 것이다.

### 第25條(建築材料의 品質)

建築物의 基礎 및 主要構造部에 使用하는 鋼製, 시멘트 其他의 建築材料의 品質은 現行法에는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韓國工業規格에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고 現行은 規定하고 있으나 建築物의 安全, 防火 또는 衛生上 必要한 資材等 建築資材의 多樣性에 비추어 보아 韓國工業規格品 또는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檢定基準에 適合한 것으로 改定한다.

### 第26條(災害危險区域)

市長, 郡守가 海溢, 高潮, 出水等 災害 豐慮가 있는 特殊地域에 關하여는 그 地域을 指定하여 建築制限措置를 條例로서 規制하도록 되어 있는 現

行規定을補完하여 그指定要件을拡大해서國防上建築物의建築을制限할必要가있다고認定하는경우에도災害危險地区로指定할수있도록한다.

### 第30條(建築線의指定)

建築線은都市計劃区域안에있어시는道路境界線으로하되巾이4미터未滿인경우에는現行規定에의하면그center線으로부터1.5미터후퇴한線을建築線으로한다. 즉巾3미터의通路를認定하고있으나이는消防道路로서의機能을다하지못하기때문에最小限度4미터는維持하여야될수있도록4미터未滿의道路인경우에는그center線에서2미터後退한line을建築線으로改正한다. 또한當該道路center線으로부터의水平距離2미터未滿의傾斜地,河川,線路敷地其他이와類似한것에接할때있어서는當該傾斜地等의道路側의境界에서水平距離4미터의line을그의道路境界線으로본다.

### 第31條의2(壁面및담장의構造等)

市長,郡守는都市計劃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담장과壁面의position,構造,色彩및지붕의構造,色彩等을當該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서定할수있도록本規定을一部補完修正한다.

### 第32條(地域内에서의建築物)

都市計劃法에의한用途地域내에서의建築制限規定은現行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準工業地域,專用工業地域,綠地地域 및混合地域等으로各各區分하여用途제限을하고있으나時代의변천에따라建築物의用途도多樣化되어가고있기때문에이에融通性있게對処하기為了해서는用途地域내建築制限規定을大統領令에委任하도록한다.

특히‘71年度都市計劃法의改正에따라用途地域제가細分되었으므로早速히이들地域내建築制限規定의調整및補完이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앞서言及한地域이細分또는調整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즉

専用住居地域,住居地域,準住居地域,商業地域,準工業地域,工業地域,專用工業地域,綠地地域,生產

綠地地域自然綠地地域等이며從前의混合地域은廢止된것이다.

### 第34條(特殊建築物의位置)

火葬場,屠殺場,中央都壳市場,伝染病院,塵埃 및汚物處理場의用에供하는建築物은그位置에關하여市場,郡守의許可를받도록되어있으나이는都市計劃法에의한都市計劃設施로서当然히決定되어야하기때문에그位置에關한別途의許可是不必要한行為로서本條項을削除한다.

### 第39條(建築面積의壘地面積에對한比率)

앞서말한細分된用途地域마다建築面積의壘地面積에對한比率을規定한것으로

- 自然綠地地域,綠地地域,生產綠地地域에있어서는 $2/10$ 이내
- 住居專用地域에있어서는 $5/10$ 이내
- 住居地域,準住居地域,準工業地域,工業地域,專用工業地域 및地域의指定이없는地域에있어서는 $6/10$ 이내.

現行規定上住居地域,工業地域또는地域의指定이없는区域에있어서는壘地面積에서30平方미터를控除한殘余面積에對하여%이내를適用하고있어이는非現實적인規定으로判斷되어30平方미터控除制을廢止하는것이다

- 商業地域에있어서는 $7/10$ 이내
- 商業地域外의防火地区안에있는建築物로서그主要構造部가耐火構造인것은 $7/10$ 이내(街路의모퉁이에있는壘地또는이에準하는壘地로서,市長,郡守가指定하는区域안에서는 $8/10$ 이내)
- 商業地域내의防火地区안에있는建築物로서그主要構造部가耐火構造인것은 $8/10$ 이내(街路의모퉁이에있는壘地또는이에準하는壘地로서,市長,郡守가指定하는区域안에서는 $9/10$ 이내)

### 第39條의2(壘地面積의最小限度)

現行도壘地面積의最少限度제가있지만이는市長,郡守가土地의狀況에따라必要하다고認定하여一定한区域을指定할경우에만適用하는것

으로 그 실績은 거의 없다.

앞서 住居地域, 工業地域에 있어서의 建築面積의 基地面積에 대한 比率을 30 平方미터 控除制를 废止하고 6/10 以内로改正施行토록 한바 이와併行하여 過密 및 零細한 建築物의 離立을 防止하기為하여 基地의 最少面積制를 都市計劃区域 全域에 걸쳐 適用토록 한다.

따라서 建築物을 建築하기 위한 基地는 그 規模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以上이어야 한다. 한편 建築物이 있는 基地도 当該 建築物에 대한 第27條(基地와 道路와의 関係), 第39條(建幣率), 基地面積의 最少限度, 第40條(容積率), 第41條(建築物의 높이 制限)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未達 되게分割될 수 있도록 한다.

#### 第40條(建築延面積의 基地面積에 대한 比率)

建築物의 建築延面積의 基地面積에 대한 比率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住居專用地域에 있어서는 100%以内
2.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1,000%以内 現行은 (800%以内)
3. 其他地域에 있어서는 500%以内 (現行은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400% 以内이다)
4. 防火地区에 있어서는 該當 地域의 容積率의 120%以内
5. 建築物주위에 道路, 広場, 河川 其他空地가 있어 交通, 防火 및 衛生上 支障이 없다고認定될 때에는 각각 当該容積率의 50%를 加算 한比率로 할 수 있다.

#### 第41條(建築物의 높이制限)

建築物의 各部分의 높이는 그 部分으로 부터 前面道路의 反對側의 境界線까지의 1.5倍의 높이를 超過할 수 없으며 現行 道路巾에 의한 높이制限規定을 適用하지 않은 경우 즉 市長 郡守가 商業地域안에 防火地区안에서 土地利用上 不得已하다고認定하여 指定公告한 区域안의 建築物의 높이에 对하여는 例外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規定을 濫用하는 事例를 防止하고자 이를 削除하며, 住居環境造成面에서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에 있어서 隣接基地境界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制限에 関하여 大統領令으로 別途 規制할 수 있도록 法的根據를 마련한다. 그리고 住居專用地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은 그 層數가 2層을 超過하거나 그 높이가 8

미터以上이 넘지 않도록 規制한다.

#### 第41條의 2 (持殊地域에 있어서의 特例)

市長, 郡守는 災害区域, 또는 地域特殊性으로 因하여 第30條(建築線의 指定), 第39條(建幣率), 第39條의 2 (基地面積의 最少限度), 第40條(容積率) 및 第41條(建築物의 높이 制限)의 規定을 適用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区域을 指定公告하고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서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거나 緩和할 수 있도록 規定한다.

#### 第42條(違反建築物 等에 대한 措置)

違反建築物에 대하여는 電話, 電氣, 水道를 設置하거나 供給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規定한다. 한편 許可厅이 違反建築物에 대하여 措置를 할 경우에는 当該建築物 또는 그 基地내에 標識를 設置하여一般人에 公示토록 한다.

#### 第42條의 2 (違反建築物의 設計者等에 대한 措置)

現行 規定上으로는 違反設計者, 工事監理者 및 工事施工者에 대하여 刑事立件以前에는 行政的 制裁가 不可能토록 되어 있음으로 이를 補完하여 許可厅은 違反建築物에 대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10日以內에 当該建築物의 設計者, 工事監理者 및 工事施工者를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며 建設部長官은 이들에 대하여 建築士法,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한 免許 및 登錄의 取消, 営業停止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補完한다.

#### 第44條(建築委員會)

都市美觀을 為한 建築計劃의 審查, 條例制定 等 大統領令으로 定한 同法施行에 関한 重要事項을 調査, 審議하기 为하여 建築委員會를 各 許可厅에 둔다.

#### 第53條의 7 (市街地 整備)

市長, 郡守는 隣接하고 있는 2以上의 基地가 그 形態나 規模가 当該 地方自治團體의 定하는 基準에 未達할 경우에 있어서 都市美觀上 또는 土地의合理的 利用을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当該 土地所有者에게 土地의 交換, 分合等 土地의 整理, 또는 同一設計에 依하여 建築物을 合同으로 建築할 것을 命 할 수 있도록 規定한다.